

참고 1

갯벌생태해설사 설명자료

□ 갯벌생태해설사 관련 법률조항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약칭: 갯벌법)]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의 해설

2. 갯벌의 홍보·교육

3. 생태탐방안내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해설사"란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자격제도 운영주체별 기능(업무)

해양수산부 (제도 총괄)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	운영사무국 (제도 운영·지원)
○ 갯벌생태해설사 법령·제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갯벌생태해설사 연간 양성 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등	○ 갯벌생태해설사 연간 양성 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홍보 및 신청·접수 ○ 교육과정(이론·실습) 운영 및 평가 등	○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절차 관리 ○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 ○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위원회 운영 ○ 양성기관 운영 및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 등

참고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명자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기관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기관장 : 김현태 관장
 -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 기관 설립연도 : 2015.4.20.
- 기관 설립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세계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주요 활동: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기초·응용연구, 해양생명통합정보 및 생물다양성 관리, 해양생물 전시·교육 및 국제협약 대응
- 주요 소장품: 국내·외 해양생물실물표본 56만여 점
- 시설규모: 부지면적 324,517㎡, 대지면적 117,066㎡, 연면적 32,173㎡, 건축면적 12,807㎡
- 주요 시설: 연구행정동, 전시동(씨큐리움), 교육동
 - 전시동은 약 8,000여 점의 해양생물에 관한 표본을 전시 중
 - 교육동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학술행사 및 국제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로 구성
- 사진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전경)



국립해양생물자원관(씨큐리움 전경)